

한국정보과학회 전문분과연구회 설치규정

제 1 조 (목 적)

본 규정은 학회 정관 제5조 3항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분과연구회(이하 연구회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임 무)

연구회는 학회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전문분야별 또는 부문별로 효율적으로수행함에 있으며, 학술행사, 회지 또는 논문지 발간의 실적을 연1회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.

제 3 조 (설 치)

1. 연구회는 정회원 5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2. 회장은 연구회의 구성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 4 조 (회원 자격)

본학회 회원은 본인의 원에 따라 관심있는 연구회에 소속 할 수 있다.

제 5 조 (기 구)

연구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구를 둔다.

1. 총 회
2. 운영위원회

제 6 조 (운영위원회 구성)

연구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.

1. 운영위원장
2. 부 위원장
3. 운영 위원
4. 감 사

제 7 조 (운영위원의 선출)

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연구회 총회 또는 연구회 규칙에 의하여 선출한다.

제 8 조 (사업 운영)

연구회에서 토의 결의된 사업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다.

제 9 조 (재 정)

1. 연구회 재정은 연구회 회원의 일정회비 및 찬조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2. 자금관리는 학회에서 총괄한다.

제 10 조 (사업 보고)

운영위원장은 본회 정기총회 전 이사회에 연간 활동사항(실적, 계획) 및 경비수지(예산, 결산)에 관하여

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회칙 제정)

각 연구회 회칙은 별도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제 12 조 (해 산)

1. 연구회 해산은 연구회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1/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으며, 운영위원장은 즉시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2. 회장은 연구회 활동이 부진하거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시킬 수 있다.
3. 소사이어티 격상시에 분과연구회는 자동 해산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 된 날(1985년 10월 15일)부터 시행한다.
2. 전산교육, 데이터베이스 및 전문대학전산교육연구회는 본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.
3.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된 날(1989년 10월 17일)부터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된 날(2005년 10월 7일)부터 시행한다.
5.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된 날(2008년 6월 13일)부터 시행한다.
6. 데이터베이스, 정보통신, 소프트웨어공학연구회는 본 규정에 의해 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.
7.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된 날(2010년 10월 28일)부터 시행한다.